

의정부지방법원 2015. 11. 24 선고 2015가단115862 판결 [대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
청구]

전 문

원고A

피고B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15. 11. 24.

주 문

1. 피고는 소외 C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의정부지방법원 가평등기소 2010. 7. 13. 접수 제1946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무변론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)

판사이동욱

별지